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0. 27.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따 로 붙 임
4. 검 토 의 견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3년 11월 6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총 일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3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난 3. 18일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한 여건변화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임대료지원대상에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지원하고, 또한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임대료 지원을 2인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도·소매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별표 2」를 신설함(안 제5조제2호바목).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위축, 수출 감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여건변화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임대료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의 종업원수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 중소기업 793개 업종에만 적용하던 임대료 지원을 2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도·소매업 등 58개 업종을 추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사항임.

○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 운영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원도심 지역의 유입 인구 및 사업체수의 감소로 인한 공실율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매출감소에 따라 경영악화 등 여건변화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바,
- 지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을 완화 또는 확대하려는 것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